

## 2000년 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

### Q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 A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 의무)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다.

■ 회계장부가 없는 무가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text{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 \text{소득금액}$$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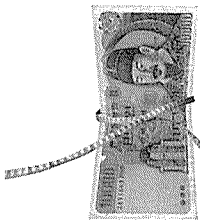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된다.

$$\text{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소득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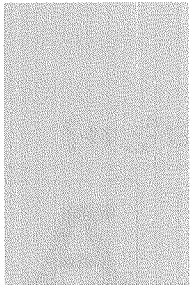
### Q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 A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 표준심의회를 심의를 거친다.



# 세무상식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 재고, 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 부도율, 상공회의소의 BSI 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 지표와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전산분석 결과와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된다.

## Q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A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45조에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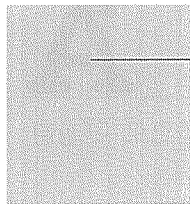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 대학, 학술연구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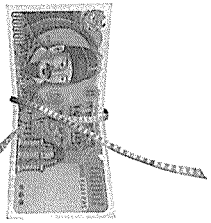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 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외부위원 비율 69%)

## Q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 A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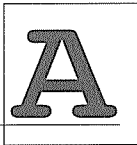


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121개 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06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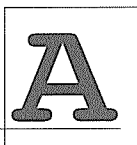
## Q5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소득세법시행령 143조 3항)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금년 5월에 2000년 귀속소득을 신고할때 한번, 내년 5월에 금년(2001년)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사용하여 앞으로 모두 2차례만 적용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 Q6 기준경비율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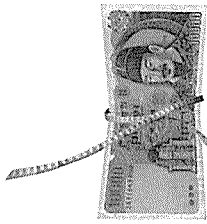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실제지출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함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기준경비율과 함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세무상식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둔다.

## Q 7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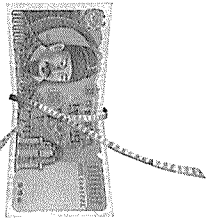
# A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 업종의 사업자는 실제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가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장 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구 분	표 준 소 득 률	기 준 경 비 율
1. 소득금액 계산 방법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추계신고자의 신고간편	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계산
2. 소득세신고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괄적으로 적용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불가 → 부과세제도에 적합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 인정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신고납세제도의 부합
3.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업종 책임 전허 없음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짐
4. 소득세조사등에 대한 부담	조사에 대한 부담없음 -추계신고 선호 이유	추계신고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검증을 받아야 함
5. 매출누락 적출시 세부담	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기산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입증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기산
6. 기장유도 효과	부성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7. 기장자에 대한 영향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을 조절에 사용	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영향	추계신고자의 정규영수증 수취 유인효과 없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라도 정규 영수증 수취 유인효과 큼



## Q8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A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소득률의 과도기적 운영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년체계를 유지하고 시험분석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경비율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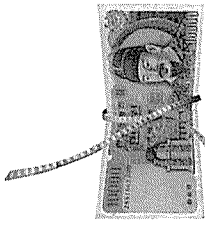
미분양주택수 증가와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관련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 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은 올수준을 인하한다.

반면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소득율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업종, 관련산업의 상대적 호황업종과 호텔, 결혼상담소, 산후 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 조정한다.

## Q9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인하 · 인상내용은?

A

주요인하종목	종목수	인하폭
미분양주택 증가 건설자 심리 위축등으로 어려운 건설업종	8	5~10
구제역 · 광우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4	5~8
산업구조변화에따른 사양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종	6	5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수출부진등으로 어려운 업종	13	3~10
유통과정 변화, 가계지출 감소등으로 어려운 불황업종	5	5~10
표본조사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2	5~10
기타 전산및 서면분석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5	5~10



# 세무상식

## 1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 2 기본율과 차등률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와 자가 사업자로 구분됨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써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 3 수입금액 차등률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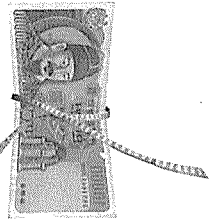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 4 일반사업자와 자가사업자율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발취)



## 별첨

### 농업(축산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기본율
	세분류	세제분류		
012101	소, 말, 및 양사육업	· 낙농 · 육우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농품 생산을 위해 젖소, 젖양을 기르는 업(직접생산한 젖을 살균하고 병에 넣어 시관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한 생우유(원유)의 처리 및 가공(+152002)</li> </ul> </li> <li>■ 쇠고기 생산을 위해 소를 사육하는 업(소정액생산포함)</li> </ul>	3.6
012102		· 말양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기, 모피, 털 등을 생산하기 위한 말 또는 양을 사육</li> <li>■ 비새, 당나귀, 노새, 염소, 마모포함</li> </ul>	10.1
012103		· 사슴		14.7
012201	기 타 축산업	· 양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 업(고기생산을 위한 멧돼지 사육포함)</li> </ul>	4.9
012202		· 산란계 · 육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기 또는 알을 생산하기 위해 닭을 사육하는 업</li> </ul>	4.7
012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가금사육</li> <li>· 양봉</li> <li>· 가금부화업</li> <li>· 양잠 및 양잠서비스</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기, 알 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각종 조류사육업</li> <li>■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벌꿀생산</li> <li>· 꿀벌 증식 및 양육</li> <li>· 벌꿀관련 생산품</li> <li>· 양봉</li> </ul> </li> <li>■ 각종 가금 및 조류를 부화하는 업(가금을 부하여 일반 및 가금사육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포함)</li> <li>■ 병아리 감별</li> <li>■ 잡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 업</li> <li>■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 생산 또는 증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옹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각종 육식동물을 사육 증식·양식하는 업</li> <li>■ 식용개구리 양식</li> <li>■ 환형동물(지렁이)사육</li> <li>■ 파충류, 곤충류 사육</li> </ul>	7.9